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230

발의연월일: 2021. 5. 20.

발 의 자:이수진·강득구·강병원

권인숙 · 김승원 · 문진석

박홍근 • 서동용 • 서영석

송갑석 · 신정훈 · 오영환

이규민 · 이동주 · 이성만

이장섭 · 이정문 · 임오경

정청래 · 조오섭 의원

(2001)

제안이유

개인의 생명·재산 보호 및 공공의 안전 보장을 위한 검찰의 국가형 벌권은 그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만 국민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음.

각종 조사에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국가 기관 중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바, 이는 검찰의 국가형벌권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임. 실제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기소는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음.

이는 검사의 국민의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과 적법절차 준수 의무 화라는 소극적 통제방식이 아닌 제도 설계와 같은 적극적 대응책 마 련이 시급함을 의미함.

제도적 통제 방안은 비대해진 검찰 권력의 축소라는 토대 위에 구축되어야 하며, 그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임.

비교법적인 측면에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세계적 추세임. 영미법계 국가들에서는 수사주체로서의 경찰과 기소주체로서의 검찰로수사권과 기소권을 이원화시켜 놓았으며,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의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검찰내 수사인력이 전무하여 실질적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검찰은 기소를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음.

이에 현행 검찰청법상의 6대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 규정을 삭제해,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검찰의 위상을 재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주요내용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과 영장 청구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함(안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수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223호),「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24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31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26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 2. 영장 청구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6조제2항 본문 중 "검찰수사서기관"을 "검찰서기관"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검찰수사서기관"을 "검찰서기관"으로, "검찰사무관· 수사사무관·마약수사사무관"을 "검찰사무관"으로 한다.

제26조제4항 중 "검찰수사서기관"을 각각 "검찰서기관"으로, "검찰사무관·수사사무관·마약수사사무관"을 "검찰사무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수사사무관 또는 마약수사사무관"을 "검찰서기관 또는 검찰사무관"으로 한다.

제45조 중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수사사무관, 마약수사사무관,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검찰서기, 마약 수사서기, 검찰서기보, 마약수사서기보"를 "검찰서기관, 검찰사무관, 검 찰주사, 검찰주사보, 검찰서기, 검찰서기보"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중 "검찰수사서기관"을 "검찰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검찰서기 및 마약수사서기"를 "검찰서기관, 검찰사무관, 검찰주사, 검찰주사보, 검찰서기 및 검찰서기보"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서기, 마약수사서기, 검찰서기보및 마약수사서기보는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수사사무관, 마약수사사무관,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를 "검찰서기 및 검찰서기보는 검찰서기관, 검찰사무관, 검찰주사 또는 검찰주사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1.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검사의 업무 보좌 제47조를 삭제한다.

제48조제2항 중 "검찰수사서기관"을 "검찰서기관"으로 한다.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5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특별수사청법」에 따른 차장 이하 사법경찰관리에 대해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검찰수사공무원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검찰수사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검찰 공무원으로 본다.
- 제3조(마약수사직렬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은 검찰직렬의 해당 직급의 공무원으로 본다.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9항제1호 단서 중 "검찰사무·마약수사"를 "검찰"로 한다.

② 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등기사무직렬 ·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사무직렬"을 각각 "등기사무직렬 또는 검 찰직렬"로 한다.

③ 집행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를 "등기주사보 또는 검찰주사보"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정 안 혂 행 개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 제4조(검사의 직무) ① ---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1.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필요한 사항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 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 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 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다. 가목 · 나목의 범죄 및 사 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2. 영장 청구 및 집행에 관하여 2.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 필요한 사항 리 지휘・감독 3. ~ 6. (생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검사	나의	직-	무관	·할)	검사	는
법령에	특별	한	규>	정 이	<u>ک</u>]는	경
우를 저	ll 외하	고	느	소속		검찰	·청
의 관혈	갈구역	에 /	서	직년	구를	수	행
한다. [구만,	수 <i>/</i>	사어] 2	필요	. 할	때
에는 관	반할구	역)	아	<u>1</u>	곳에	서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다	<u>}.</u>		

제16조(직제) ① (생 략)

② 제1항의 부, 사무국 및 과에는 각각 부장, 사무국장 및 과장을 두며, 부장은 검사로,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과장은검찰부이사관·정보통신부이사관·검찰수사서기관·정보통신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보한다. 다만, 부의 과장은 검사로 보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제20조(직제) ① • ② (생 략)

③ 제1항과 제2항의 사무국 및 과에는 각각 사무국장 및 과장 을 두고, 사무국장은 고위공무 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

-	
-	
-	
-	<단서 삭제>
제1	[6조(직제) ① (현행과 같음)
	2
-	
_	
_	
-	
-	
_	<u>검찰서기관</u>
_	
_	
_	
	•
	③·④ (현행과 같음)
제2	20조(직제) ①·② (현행과 같
1	<u>승</u>)
	3
_	
_	
_	

제5조(검사의 직무관할) -----

로, 과장은 검찰부이사관·<u>검찰</u>수사서기관·정보통신서기관· 검찰사무관·수사사무관·마약수사사무관·전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생략)

제26조(직제) ① ~ ③ (생 략)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무국장 및 과에는 각각 사무국장 과 과장을 두고,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검찰부이사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과장은 검찰부이사관·검찰수사서기관·정보통신서기관·검찰사무관·수사사무관·마약수사사무관·전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보한다.
- ⑤ (생략)
- 제32조(검사의 직무대리) ① (생 ^저략)
 - ② 검찰총장은 필요하다고 인 정하면 검찰수사서기관, 검찰

<u>서기관</u> <u>검</u>
찰사무관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직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4
검찰
서기관
<u>검찰서기관</u>
검찰사무관
⑤ (현행과 같음)
제32조(검사의 직무대리) ① (현
행과 같음)
2
검찰서기관 또는 검

거ᅰ

사무관, 수사사무관 또는 마약수사사무관으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③·④ (생략)

- 제45조(검찰청 직원) 검찰청에는 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검찰부이사관, <u>검찰수</u>사서기관, 검찰사무관, 수사사무관, 다약수사사무관,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검찰서기, 마약수사서기, 검찰서기보, 마약수사서기보 및 별정직 공무원을 둔다.
- 제46조(<u>검찰수사서기관</u> 등의 직 자무) ① <u>검찰수사서기관</u>, 검찰사 무관,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검찰서기 및 마약수사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무에 종사한다.
 - 1. 검사의 명을 받은 수사에 관 한 사무
 - 2. ~ 4. (생 략)
 - ② 검찰수사서기관, 수사사무관 <삭 제> 및 마약수사사무관은 검사를

<u>잘사무관</u>
③・④ (현행과 같음)
제45조(검찰청 직원)
검찰서
기관, 검찰사무관, 검찰주사, 검
찰주사보, 검찰서기, 검찰서기
<u> </u>
.
제46조(<u>검찰서기관</u> 등의 직무) ①
검찰서기관, 검찰사무관, 검찰
주사, 검찰주사보, 검찰서기 및
<u>검찰서기보</u>
1.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검사의 업무보좌
2. ~ 4. (현행과 같음)

보좌하며 「형사소송법」 제24 5조의9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 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 수사를 한다.

- 찰서기보 및 마약수사서기보는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수사사무관, 마약수사사무관,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 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를 보좌한다.
- ④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 관,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 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검 찰서기 및 마약수사서기는 수 사에 관한 조서 작성에 관하여 검사의 의견이 자기의 의견과 다른 경우에는 조서의 끝 부분 에 그 취지를 적을 수 있다.

제47조(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 | <삭 제> 수행) ① 검찰주사, 마약수사주 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 보, 검찰서기, 마약수사서기, 검 찰서기보 또는 마약수사서기보 로서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 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

③ 검찰서기, 마약수사서기, 검 │ ③ 검찰서기 및 검찰서기보는 검찰서기관, 검찰사무관, 검찰 주사 또는 검찰주사보-----<삭 제>

- 은 소속 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접수한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 한다.
- 1.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 찰주사보 및 마약수사주사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제 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 무
- 2. 검찰서기, 마약수사서기, 검
 찰서기보 및 마약수사서기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제
 3항에 따른 사법경찰리의 직
 무
- ② 별정직공무원으로서 검찰총 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 한다.
- 1. 5급 상당부터 7급 상당까지의 공무원: 「형사소송법」제245조의9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
- 2. 8급 상당 및 9급 상당 공무

 원: 「형사소송법」 제245조

 의9제3항에 따른 사법경찰리

 의 직무

제48조(검찰총장 비서관) ① (생 | 제48조 략) 행과

② 비서관은 <u>검찰수사서기관</u>이 나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으로 보하고 검찰총장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제49조(통역공무원 및 기술공무 차 원) ① (생 략)

② 제1항의 공무원은 상사의 명을 받아 번역·통역 또는 기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다만, 전산사무관, 방송통신자무관, 전산주사보, 항송통신주사, 전산주사보, 방송통신주사보, 전산서기, 방송통신서기, 전산서기, 방송통신서기보로서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 소속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접수한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1. 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전산주사, 방송통신주사, 전산 주사보, 방송통신주사보: 「형 사소송법」 제245조의9제2항

세48소(검찰총상 비서관) ① (연
행과 같음)
② <u>검찰서기관</u>
.
세49조(통역공무원 및 기술공무
원) ① (현행과 같음)
2
서 삭제>

<삭 제>

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

2. 전산서기, 방송통신서기, 전 산서기보, 방송통신서기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 제3항에 따른 사법경찰리의 직무

<삭 제>

제54조(교체임용의 요구) ① ~ 제54조(교체임용의 요구) ① ~ ② (생략) <신 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은 「특수수사 청법」에 따른 수사정감 이하 사법경찰관리에 대해 준용한다.